

1999. 12. 24(금)
제55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

제천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
심사보고서

산업도시위원회

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 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12. 14 제천시장
- 나. 회부일자 : 1999. 12. 14
- 다. 상정일자 : 1999. 12. 20 (제55회 정기회 산업도시위원회 5차 회의)

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건설과장 서광우)

【 제안사유 】

-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무를 조정하고 재해동에 따른 감면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함

【 주요내용 】

- 재해동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
 -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점용료 전액 면제
 -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 면적비율에 따라 점용료 감면
 - 농작물등의 재배를 위한 경우 피해정도가 50% 이상인 때에는 전액 면제하고 50% 미만인 때에는 비율에 따라 점용료 감면
- 도로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신설
 -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할 경우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 전액 면제
- 도로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
 -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경우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변경하고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(전문위원 박용태)

【 법적검토 】

- 도로법 제43조,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에서 점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,
-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고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조례로서 법적 저촉 사항은 없다고 판단됨.

【 행정적 검토 】

- 현행조례 제3조(점용료의 산정기준)에 신설된 제5항은 광고탑, 광고판, 간판등의 표시면적 산출기준을 구체화 한 것이며,
- 제6조는 재해, 기타특별한 사정에 의한 감면사유를 보다 세분화하여 명확히 하고, 영리목적이 아닌 주택 출입로는 점용료를 감면하여 주민 편익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임.
- 전반적으로 개정되는 조례안은 점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불편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세심한 심사가 필요함.

4. 질의답변 요지

- ☞ 질의1)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징수건수는 년간 어느정도나 되고, “부당이득금”을 “변상금” 개정하면서,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는데 상위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? (최상귀 위원)
- ☞ 답변) '99년도중 부당이득금 징수실적은 없으며, 변상금 100분의 120은 도로법 제80조의 2에 규정된 사항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임 (건설과장 서광우)
- ☞ 질의2) 안제6조4항에 주택에 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 전액을 면제하도록 신설하였는데 주상복합건물일 경우는 어떻게 적용하는가? (이종호 위원)
- ☞ 답변) 순수한 주거목적 건물만 적용됨 (건설과장 서광우)
- ☞ 질의3) 변상금 100분의 120은 부담이 가중되는 규정인데 의견 제시건수는 있었으며, 민원발생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가? (최몽룡 위원장)
- ☞ 답변) 입법예고중 의견제시는 없었으며,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관련규정을 이해시키고 시정소식지등을 이용하여 적극 홍보하겠음 (건설과장 서광우)

5. 소수의견

“ 없 음 ”

6. 토론요지

“ 없 음 ”

7. 심사결과

“ 원안가결 ”

8. 심사보고서 불임서류

제천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증 개정조례안 1 부. 끝.